

# 남구 진아리채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I

###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6-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25층~27층 2개동, 총 165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전용 85㎡이하 주택건설량 10%범위)

주택형	타입	총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배정세대수 (예비)	입주예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84.8989A	84A	50	84.8989	25.6529	110.5518	5(15)	2024년8월 (예정)
84.9913B	84B	48	84.9913	25.6298	110.6211	5(15)	
84.9741C	84C	23	84.9741	26.2489	111.2230	2(6)	
84.7630D	84D	44	84.7630	26.3097	111.0727	4(12)	
소계		165				16(48)	

※ 상기 타입은 표기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청약시 주택형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 세대내역

(단위:세대)

구분		대상세대수 (예비)	84A (예비)	84B (예비)	84C (예비)	84D (예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5(15)	2(6)	1(3)	1(3)	1(3)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3(9)	1(3)	1(3)	-	1(3)
중소기업근로자		3(9)	1(3)	1(3)	-	1(3)
장애인	광주광역시	5(15)	1(3)	2(6)	1(3)	1(3)
합계		16(48)	5(15)	5(15)	2(6)	4(12)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2020.02.28.)호 관련 예비입주자 비율을 종전 40%에서 3배수(300%)로 확대하여 선정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1. 10. 01(금)	일간신문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1. 10. 12(화)	인터넷 청약접수(08:00~17:30)-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 현장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 취약자 등)
당첨자 및 등·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1. 10. 21(목)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 공동인증서 필히 지참, 은행창구 접수 불가)

※ 견본주택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마락동 184-18번지 남구 진아리채 주택전시관

## II

### 특별공급자격

■ 기본요건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접수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약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니 신청자격에 대한 검증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청약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0.01.(금)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단, 중소기업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청약예금 :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주택의 전용면적	거주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85제곱미터 이하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500만원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아닌 자.(단, 철거민 대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확인(공동인증서 이용)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적격여부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1번(무주택세대원 및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III

##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확정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당첨확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당첨확정자 :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자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1. 10. 01(금)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남구 진아리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련문의 : 062-373-1413